

사 업 명						
(1)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214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41	301
명칭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방송통신이용자 보호환경조성	2,913	2,900	2,900	2,900	2,758	△142	△4.9

4. 사업목적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정보제공과 보호활동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이용자권의 보호
-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포털,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불편을 야기하는 인터넷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사항 해결 및 권익증진

-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사후 모니터링, 정보제공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건전한 모바일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보호
-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통신분쟁조정제도 신설('19.6월)에 따라 분쟁조정 지원 시스템 구축, 상담센터 운영, 통신품질 현장검증 운영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제32조(이용자보호)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 행위)

제50조(금지행위)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성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방송통신위원회직제 제7조제6항(이용자보호과)

1. 방송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4. 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평가 제도의 운영
9. 노인 등 소외계층의 사이버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앱 보급
10. 방송통신서비스분야 이용자교육 및 참여방안 수립 및 운영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행위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5)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개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추진경위

- '06년 : 보안서버 수요 진작, 공급기반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국무회의 보고)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
- '07년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개정
 - ※ 기존 암호화 조치를 보안서버 구축으로 명시하여 행정조치 근거 마련(제6조)
- '09년 : 이용자전용 홈페이지(wiseuser.go.kr) 구축 및 제1회 이용자보호 주간 운영
- '10년 :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 설치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 시행(KAIT)
- '11년 : 다문화가정 대상 e-learning 콘텐츠 개발, 방송통신 이용자 리포터단 운영
- '12년 :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 '13년 :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앱 결제 안심터' 구축
- '14년 : 선택재앱 삭제 가이드라인 마련('14.1월)
- '15년 : 대국민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문자메시지 발송
- '16년 : 모바일 앱 결제 환불처리 기준 마련 및 안내서 배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중요사항의 설명 및 고지 의무 및 선택재앱 금지행위 법적근거 마련 '16.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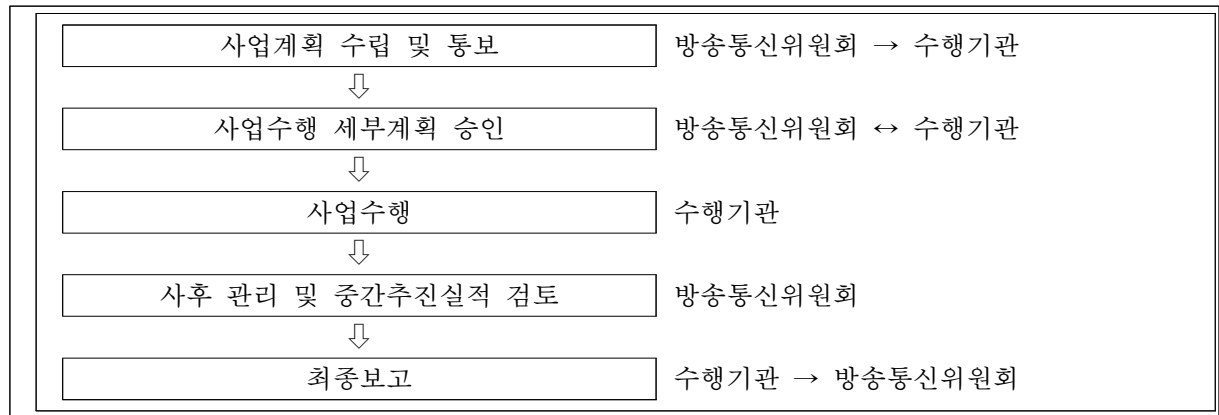
- '17년 : 미성년자의 정보이용료 피해예방을 위한 '자녀정보료 알리미 서비스' 도입, 유료 앱 서비스 관련 앱 내 해지기능 마련
- '18년 :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정보이용료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도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18.12월)
- '19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비필수앱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 '19.6월시행)
- '20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앱마켓 사업자의 정의, '20.5월),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개소('20.4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구축('20.12월)
- '21년 :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관련 안내서 설명회 실시('21.3월), 통신분쟁 조정지원 시스템 대국민서비스 개시('21.1월),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21.1월),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21.6월), 통신사업자별 통신분쟁조정 대응현황 분석·공표('21.6월), 앱마켓 이용 분쟁을 통신분쟁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21.9월),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 소위원회 발족('21.10월)
- '22년 : 애플 앱스토어 모바일 앱 구독서비스 해지절차 개선('22.1월), 통신분쟁 조정사례집 발간('22.2월), 통신품질 현장검증체계 구축·운영('22.6월), 이통사 제휴 부가서비스 고지 및 해지·환불 관련 절차 개선('22.7월), 통신사업자별 통신분쟁조정 대응현황 분석·공표('22.7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 제4항
한국메타버스산업연합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214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41	302
명칭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방송통신시장 조사 분석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방송통신시장 조사 분석	2,014	2,085	2,085	2,350	2,350	265	12.7

4. 사업목적

-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통신서비스 분야별 이용자 차별적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시장 감시 및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통신시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
-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인터넷플랫폼시장(앱 마켓, 포털·검색, 소셜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현황조사, 공정경쟁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 체계적인 규제체계 마련

-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 비교) 이동통신 단말기의 국내·외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와 사업자의 출고가 인하 유도
-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 분석체계 운영) 방송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시정을 통한 공정경쟁 시장 확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 마켓”이라 한다)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50조(금지행위)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 등)

제51조(사실조사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에게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 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제공)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제공)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11조(긴급중지명령)

제11조(긴급중지명령)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4항·제5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13조(사실조사 등)

제13조(사실조사 등)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2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추진경위

- 2009 :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KTOA)

- 2010 ~ :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KAIT, 3억)

- 2014 : 단말기유통법 시행 관련 조사 대상 확대 실시(6억)

- 2015 :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실시

- 2016 : 유무선결합 시장 모니터링 실시

- 2018 :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KAIT),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 비교 실시(KISDI)

- 2019 : 인터넷플랫폼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수행기관 변경(KISA, 출연)

※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 2020 :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비교 사업 수행기관 변경(KAIT,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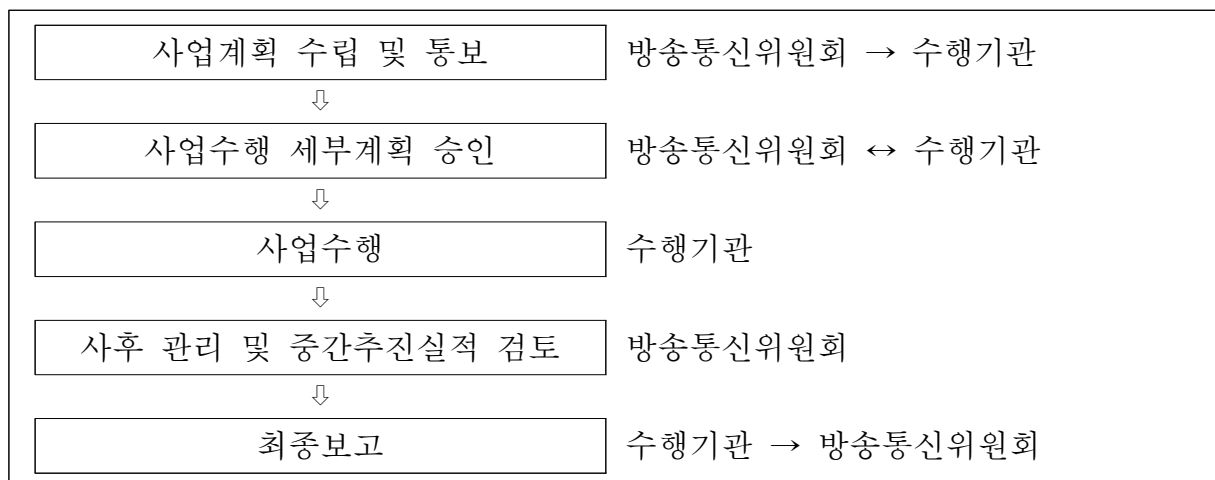
※ 사업내용이 정책연구가 아닌 가격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인 점, 사업예산 축소와 기존 수행기관인 KISDI 연구인력의 고임금 구조가 상충되는 점 등을 반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출연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민(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 제4항
한국인터넷진흥원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2141-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41	307
명칭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239	229	229	229	229	-	-

4. 사업목적

- (위치정보 보호환경 조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 법 체계 개선 및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교육
- (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사업자가 위치정보법에서 요구되는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상담 및 안내를 통해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인식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15~26조(위치정보의 보호), 제33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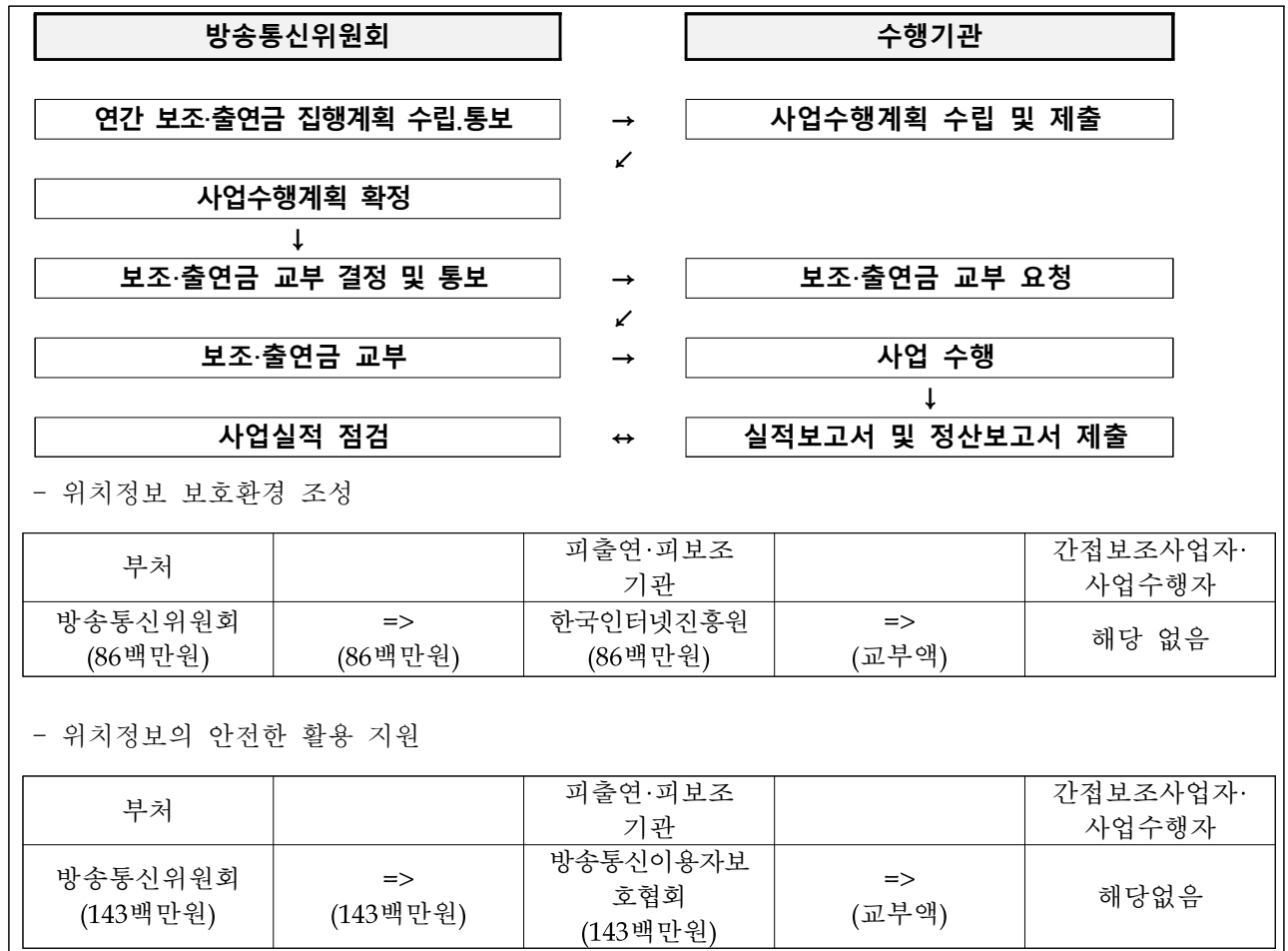
- LBS 산업육성 및 사회 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계획('10.6월)
- 경제정책조정회의(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전략 ('11.1월)
-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방통위 '11.8월)
- 위치정보, 7대 스마트 신산업 육성지원(방통위 기본계획 '11.11월)
- 창조적 LBS 산업발전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16.1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2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인터넷진흥원(출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민간보조)
- 사업 수혜자 :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인터넷진흥원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2141-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41	309
명칭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불법스팸대응체계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불법스팸 대응체계구축	3,346	3,291	3,291	3,291	3,291	-	-

4. 사업목적

- (불법스팸 고충처리)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 처리를 위해, 신고 접수된 불법스팸의 법 위반 여부 등 사실조사 및 스팸 관련 민원 상담·접수 지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휴대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발송되는 불법스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스팸방지 인식제고 및 법제연구 등)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대상 인식제고 교육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0조의8, 제52조, 제64조, 제65조
- 추진경위
 - '03. 1. 불법스팸대응센터 개소
 - '05. 3. 전화·팩스 광고에 대한 사전수신동의(Opt-in) 제도 도입
 - '06. 3.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 '07. 2.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개시
 - '09.10. 스팸방지 종합대책 수립
 - '11. 1. 스팸방지 종합대책 수립
 - '14.11. 이메일 등 모든 전송매체에 사전수신동의 제도 도입
 - '15. 9.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내서 발간
 - '16. 9. 음성 전화광고 시 수신자의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시행
 - '18. 2. 음성인식을 적용한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 운영
 - '19.10. 한국마사회 MOU 체결(스팸데이터 제공을 통한 불법경마사이트 차단조치 등)
 - '20.~22. 스팸데이터 개방 MOU 체결(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강원경찰청 등)
 - '21. 10.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 수립(관계기관 합동)
 - '22. 4. 금융기관 화이트리스트 기반 스팸 차단체계 구축·운영
 - '22.12. 유선·인터넷전화 사업자 스팸대응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이용약관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관련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인터넷진흥원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정책총괄 및 관리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
② 협약체결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협의
③ 사업비 지급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비 자금배정신청, 사업비 지급
④ 사업수행 ↓	한국인터넷진흥원	· 직접수행, 협력기관 위탁수행 등
⑤ (익년) 사업결과보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⑥ (익년) 사업비 정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잔액 반납

사 업 명	
(5)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217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71	301
명칭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방송인프라지원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7,491	6,765	6,765	6,089	6,089	△ 676	△ 10.0

4. 사업목적

-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은 방송법 제54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의 운영 보조를 위한 것임

• 사회교육방송 : 외국 거주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 • 대외방송 : 국제친선 및 이해 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제54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②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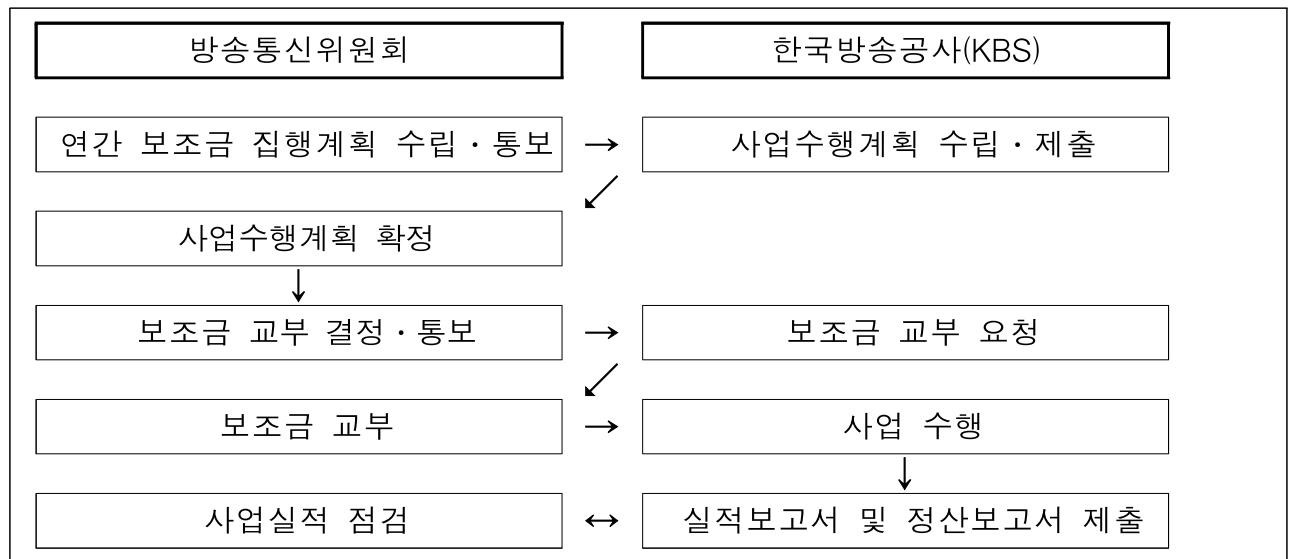
- '48. 8월 : 국영방송으로 출범
- '73. 3월 : 한국방송공사로 출범 이후 매년 국고보조금 신청
- '05. 12월 : 국회 예결위, '06년 예산 편성시 KBS 대외방송 송출비 예산지원 결정
- '06. 1월 : '05년 국회예산 승인으로 정부지원 최초 시작
- '09. 12월 : 국회 예결위, '10년 KBS 송신시설교체비 예산지원 결정
- 현재 : 방송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06년~계속)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공사(KBS)
- 사업 수혜자 : 대외방송(전 세계인 대상) / 사회교육방송(외국 거주 한민족 대상)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방송공사	100%	방송법 제54조 및 제61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6)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인프라 개선(217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171	303
명칭	방송인프라지원	방송인프라지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인프라 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인프라 개선	2,148	2,065	2,065	1,652	1,652	△413	△20.0

4. 사업목적

- (방송제작시스템) EBS의 노후 방송장비 교체 및 UHD 제작시설 전환을 통한 고품질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것임
- (네트워크시스템) HD 및 UHD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존 노후 서버 교체 및 스토리지 증설을 통한 저장용량 확대와 네트워크 전송속도 향상을 통한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시간 단축 및 제작품질 향상 도모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및 제24조(보조금 등)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出捐額)
2.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른 이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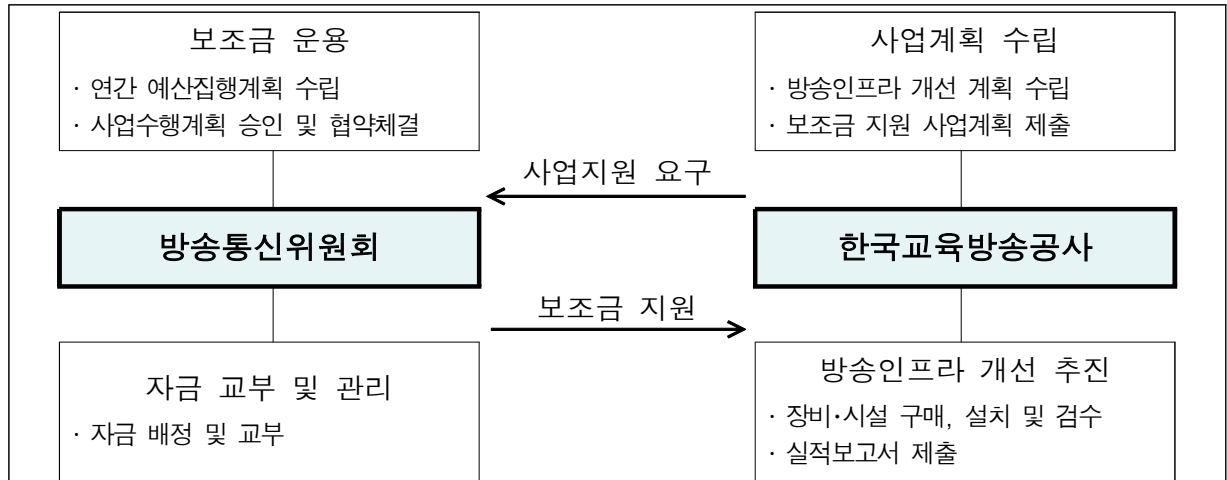
- '00. 06월, 한국교육방송공사 설립
- '01. 06월, SD급 디지털TV 방송 실시
- '05. 07월, 디지털 전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필요 지적(국회 상임위)
- '14 ~ '17년, EBS 디지털통합사옥건립(방송인프라 재구축)
- '15. 12월, 정부 지상파 UHD 도입 계획 발표(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 '20. 12월, 정부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발표(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교육방송공사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시청자 및 청취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교육방송공사	10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및 제24조(보조금 등)

7. 사업 집행절차



-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인프라 개선’ 내역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방통위 (1,652백만원)	=> (1,652백만원)	한국교육방송공사 (1,652백만원)	=> (-)	해당없음

사 업 명						
(7) 본부(총액대상) (7101-1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1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본부인건비	본부(총액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본부(총액대상)	19,348	21,102	21,066	22,579	21,313	211	1.0

4. 사업목적

- 방송통신위원회(본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 추진경위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보수지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8) 방송통신사무소 인건비 (7102-1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51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방송통신사무소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방송통신사무소 인건비	2,602	2,816	2,816	3,013	2,667	△149	△5.3

4. 사업목적

- 방송통신사무소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 추진경위 : 방송통신사무소 공무원 보수지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9) 운영지원과(총액대상) (7111-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1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운영지원과(총액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운영지원과 (총액대상)	1,148	1,242	1,242	1,298	1,298	56	4.5

4. 사업목적

- 방통위 운영지원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2023년도 예산 작성지침
- 추진경위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0) 기획조정관(총액대상) (7111-2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2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획조정관(총액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획조정관 (총액대상)	143	165	165	172	172	7	4.2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총액대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편성지침의 통보), 2023년도 예산 작성지침
- 추진경위 : 매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1) 대변인(총액대상) (7111-2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3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대변인(총액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대변인 (총액대상)	62	73	73	76	76	3	4.1

4. 사업목적

-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2023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추진경위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편성



재배정계획 수립



예산 재배정



예산 집행

사 업 명
(12) 방송정책국(총액대상) (7111-2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4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방송정책국(총액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방송정책국 (총액대상)	14	24	24	24	24	-	

4. 사업목적

- 방송정책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2023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 추진경위 : 매년 방송정책국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편성



재배정계획 수립



예산 재배정



예산 집행

사 업 명
(13) 이용자정책국(총액대상) (7111-2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5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이용자정책국(총액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이용자정책국 (총액대상)	30	33	33	33	33	-	-

4. 사업목적

- 이용자정책국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추진경위 : 매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편성



재배정계획 수립



예산 재배정



예산 집행

사 업 명	
(14) 방송기반국(총액대상) (7111-2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6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방송기반국(총액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방송기반국 (총액대상)	8	17	17	17	17	-	-

4. 사업목적

- 방송기반국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202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 추진경위 : 매년 방송기반국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5) 운영지원과 (7111-2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1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운영지원과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운영지원과	771	810	795	821	821	11	1.4

4. 사업목적

- 방통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2023년도 예산 작성지침
- 추진경위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편성



재배정계획 수립



예산 재배정



예산 집행

사 업 명						
(16) 기획조정관(7111-2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2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기획조정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기획조정관	869	1,233	1,137	1,230	1,230	△3	△0.2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편성지침의 통보), 2023년도 예산 작성지침
- 추진경위 : 매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편성



재배정계획 수립



예산 재배정



예산 집행

사 업 명
(17) 대변인 (7111-2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3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대변인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대변인	38	41	41	45	45	4	9.8

4. 사업목적

- 대변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2023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추진경위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8) 방송정책국 (7111-2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4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방송정책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방송정책국	110	119	119	120	119	-	-

4. 사업목적

- 방송정책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편성지침의 통보), 2023년 예산 편성지침
- 추진경위 : 매년 방송정책국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편성



재배정계획 수립



예산 재배정



예산 집행

사 업 명						
(19) 이용자정책국 (7111-2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5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이용자정책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이용자정책국	105	152	152	128	128	△24	△15.8

4. 사업목적

- 이용자정책국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편성지침의 통보), 2023년 예산 편성지침
- 추진경위 : 매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편성



재배정계획 수립



예산 재배정



예산 집행

사 업 명	
(20) 방송기반국 (7111-2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6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방송기반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방송기반국	95	115	115	114	114	△1	△0.9

4. 사업목적

- 방송기반국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편성지침의 통보), 2023년 예산 편성지침
- 추진경위 : 매년 방송기반국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편성



재배정계획 수립



예산 재배정



예산 집행

사 업 명
(21)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총액대상)(7118-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1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총액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 (총액대상)	93	103	103	106	106	3	2.9

4. 사업목적

- 방송통신사무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편성지침의 통보), 2023년도 예산 작성지침
- 추진경위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사무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2)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7118-2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1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	207	283	263	277	277	▽6	▽2.1

4. 사업목적

- 방송통신사무소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편성지침의 통보), 2023년도 예산 작성지침
- 추진경위 : 매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사무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편성



재배정계획 수립



예산 재배정



예산 집행

사 업 명						
(23) 국내외협력업무수행 (71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301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방송통신운영지원	국내외협력업무수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국내외협력업무 수행	419	669	638	754	663	△6	△0.9

4. 사업목적

- (국제협력업무수행)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인프라 구축 및 정부 간 협력 및 해외 정책사례 조사,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참여, 통상협상 참가
- (국내협력업무수행) 뉴스 콘텐츠 이용,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위원회 대표 온라인 채널 운영 등을 통한 주요 정책과제 홍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방송통신국제협력)

제23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방송법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제97조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조 ①정부는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한다.
② 정부는 협상의 결과가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688('10.3.18.)

뉴스저작권 보호와 올바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뉴스콘텐츠 유료구매 확대 추진 등 뉴스저작권 이용 활성화 가이드라인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1182('13.5.14.)

뉴스저작권 보호와 올바른 이용 확산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여 2011~2013년간 연도별로 국가기관 관련 예산(일반수용비) 편성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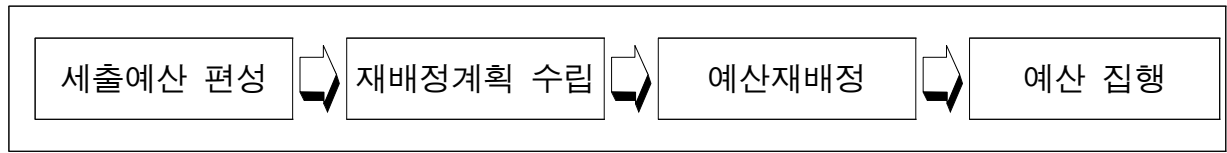
- 국내외 협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지원 경비로 2006년부터 예산편성

※ 2014년부터 국내협력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1억원)을 신규 편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 관계자 및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4)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71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302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방송통신운영지원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07	121	121	121	121	-	-

4. 사업목적

- 전문가 특강, 참여형 교육, 외국어 교육, 독서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창의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감각을 높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 소속 공무원의 변화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도모하여 정책성과 창출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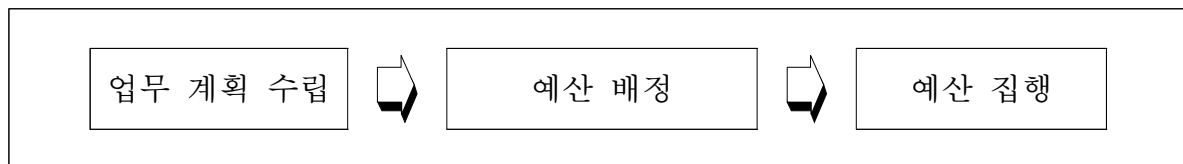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공무원인재개발법 제8조
인재개발계획의 작성)
- 추진경위 : '05년부터 소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및 창의력을 제고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 관계자 및 이용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5)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71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303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방송통신운영지원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235	219	219	229	229	10	4.6

4. 사업목적

- ‘공익채널제도’의 실효성을 유지·제고함으로써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고 공적 책임 강화, 방송콘텐츠의 다양화, 상대적 소수자의 이해 반영, 국민 정서 함양, 방송의 교육적 역할 증대 등에 기여
- (공익·장애인복지채널 방송 모니터링) 방송법에 따라 선정(인정)된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이 당초 운영계획에 따라 제작·방송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적 수준을 평가

- (공익·장애인복지채널 프로그램 평가) 모니터링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 평가 실시, 계획대비 이행실적이 미진하거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경우 개선을 요청하고 차기 공익채널 신청자격 배제 등 사후관리에 활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70조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
⑧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2

제54조(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의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이하 "종교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이하 "장애인복지채널"이라 한다)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1개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종교채널을 두는 경우에는 특정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채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2(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8항 전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로서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공익채널을 방송분야별로 1개 이상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해당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채널 선정의 심사기준,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등 공익채널의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15조

제14조(공익채널 실적평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운영 계획 준수 여부, 공익채널 선정조건 이행 여부 및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적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 평가기관의 장은 실적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익채널 운영실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①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사항을 준용하며 각 조항의 본문에서 "공익채널"은 "장애인복지채널"로 "선정"은 "인정"으로 간주한다. …(이하 생략)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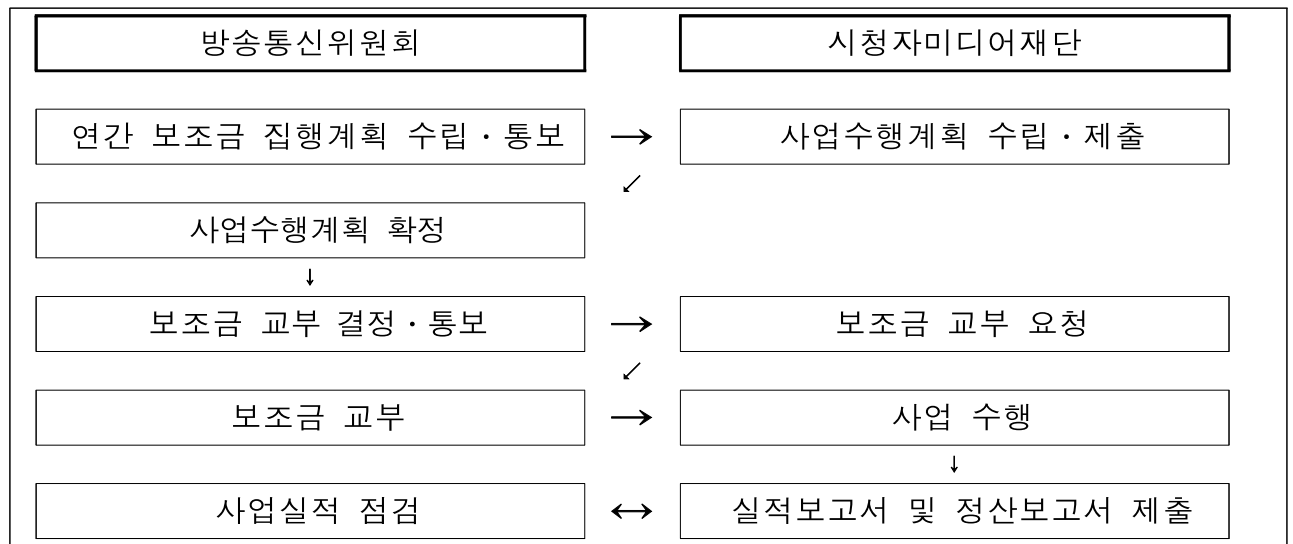
-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의결하여 공익채널 개념 도입(제34차 방송위원회, '04.7월)
- 「방송법」 제70조제8항 신설로 '공익채널' 제도 명문화('07.1월)
- 공익채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운영계획 대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결정('07.11월)
- 사업자가 제출한 분기별 운영계획 대비 실적에 대해 점검하여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의 공익적 수준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09~)
-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채널 제도 명문화('12.7월), 이에 대한 운영계획 대비 실적에 대해 별도 점검 실시('13~)
- 「방송법 시행령」 제56조의2 개정을 통해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연장(1→2년), 선정 사업자들의 채널 운용 안정성 확보('18. 2월)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심사의 일관성 제고('18. 7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
- 사업 수혜자 :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시청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시청자미디어재단	100%	○ 「방송법」 제70조 ○ 「방송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2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15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6) 법정위원회 운영 (71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304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방송통신운영지원	법정위원회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법정위원회 운영	141	215	196	215	152	△63	△29.3

4. 사업목적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책수립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31조, 제35조, 제35조의3,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42조의2 및 제76조의2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 제2항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8 신설('19. 6. 12.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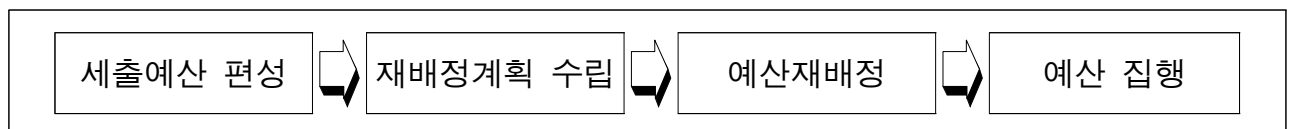
○ 추진경위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 2008. 7. 11. 위원회 구성
- 방송평가위원회 : 2000. 8. 13. 위원회 구성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 2008. 8. 19. 위원회 구성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 2007. 11. 1. 위원회 구성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 2008. 9. 26. 위원회 구성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 2010. 3. 31. 위원회 구성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 2012. 4. 13. 위원회 구성
-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 2011. 5. 27. 위원회 구성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 2013. 6. 10. 위원회 구성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2019. 6. 12. 위원회 구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7) 방송통신위원회 시설운영 (71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305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방송통신운영지원	방송통신위원회시설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방송통신위원회 시설운영	1,342	789	789	973	973	184	23.3

4. 사업목적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시설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 ('23년 신규) 위원회 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경비(중대재해처벌법 법적의무 사항 이행에 필요한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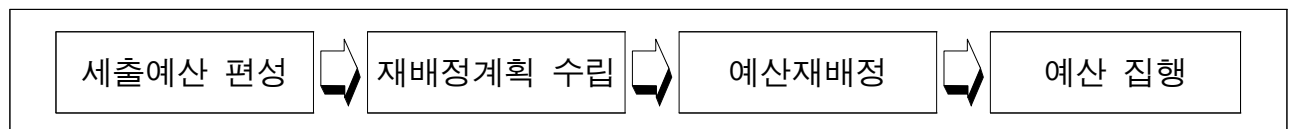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 물품관리법 제4조(물품의 관리)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추진경위
 - 매년 위원회 조직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 이행에 필요한 예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8)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7131-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306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방송통신운영지원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163	261	246	256	256	△5	△1.9

4. 사업목적

-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지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심사 지원, 방송사업 재허가·재승인 이행실적 점검) 방송사업·위치정보사업·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인·허가 및 승인 등에 대한 심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및 제15조(변경허가등),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제17조(재허가 등)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및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및 제8조(변경허가 등), 제10조(재허가)

○ 추진경위

- '06년 ~ : 위치정보사업 인·허가심사 지원
 - ※ '12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 사업 내 편성
- '08년 ~ :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 ※ '07년 이전에는 방송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
- '13년 ~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방송사업자·위치정보사업자·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및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9)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7131-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일반회계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307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방송통신운영지원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1,118	753	753	863	863	110	14.6

4. 사업목적

- (방송재난관리 강화)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관리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체계적 대응 및 효율적인 재난방송 실시를 지원하는 것임
- (방송재난관리 활동지원)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중요방송 시설 안전점검 등으로 방송재난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 (비상대비 및 보안활동 지원) 을지연습, 충무계획 실시, 비상대비 확인점검, 보안 감사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 지역에 라디오, DMB 수신환경 개선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가능 하도록 하여 국민안전 확보 및 재난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40조(재난방송 등),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제40조의3(재난방송 수신시설의 설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73조(재난대비훈련)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훈련의 실시)

○ 추진경위

○ 방송재난관리 강화 등

- 사업추진 배경
 - 국무총리(2008.3.10) : 재난관리 등을 위한 외국사례를 연구·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 마련
 - 대통령(2011.3.22) : 재난방송에 있어 일본의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매뉴얼을 보장하는 게 좋을 것 같음
 - 대통령(2014.5.1) : 재난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
 - 대통령(2017.7.27)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KBS)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 사업추진

- 2003년 : 통신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중장기 계획수립
- 2004년 : 통신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재난관련 DB 구축
- 2006년 ~ 2009년 : 통신재난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재난 방송온라인시스템 구축 및 기능개선
- 2010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통과
- 2011년 : 지진자동자막송출시스템 확대 구축(MBC, SBS)
- 2011년 : 중앙재난방송협의회 구성
- 2014년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요청기관 확대(원안위, 한강홍수통제소), 지진자동자막송출시스템 구축 완료(10개 주요방송사업자)
- 2015년 : 지진, 지진해일 발생 시 영어 자동자막서비스 실시(10개 주요방송사업자)

- 2016년 :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기능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
- 2018년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2018.1.2.) 및 재난방송 등 종합매뉴얼 표준안 개정(2018.3.30.)
- 2019년 :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2019.5.14.) 및 시행, 재난방송 등 종합매뉴얼 표준안 개정(2019.12.27.)
- 2020년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2020.3.2.)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 '14. 6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도로·지하철·철도 터널 내에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한 재난방송 수신시설 (라디오·DMB) 설치 근거 마련
- '16. 6월, 국토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 '18. 12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여부 및 수신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할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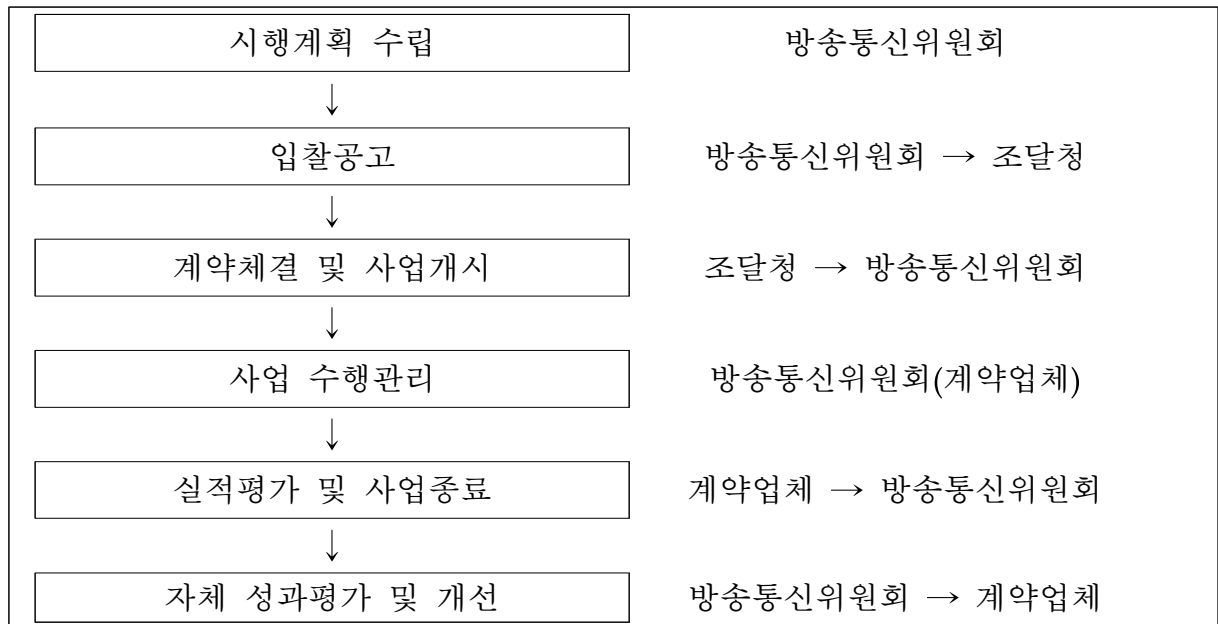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통신재난('03~계속), 재난방송('08~계속), 비상대비(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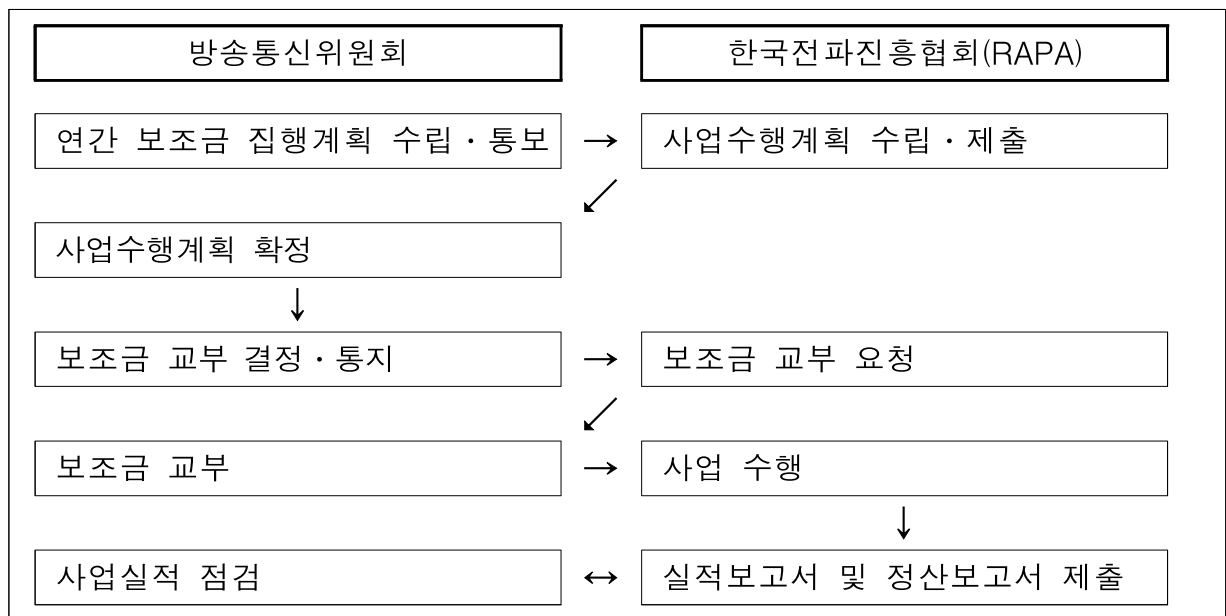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전파진흥협회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3

7. 사업 집행절차

○ 방송재난관리 강화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 업 명
(30) 행정사무정보화(7131-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307
명칭	방송통신행정지원	방송통신운영지원	행정사무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행정사무정보화	1,227	2,068	2,068	1,257	1,257	△811	△39.2

4. 사업목적

-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원회 내 서버·네트워크·상용소프트웨어 등 기반 시설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관리시스템의 통합위탁 운영 및 유지 관리
- (대국민서비스 유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및 기능 개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 (행정사무정보화 시설유지) 사무용PC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 네트워크장비, 업무·인터넷망백본, 정보보호 SW 등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지능화된 보안장비 및 보안SW 도입

- (정보보호 수준 강화)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통신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보호체계 구축
- (방송통신시장 조사시스템 운영) 방송통신위원회 효율적인 조사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심결관리시스템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장비 운영 유지관리
- (방송통신사무소 정보시스템 및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방송통신사무소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전자회의시스템 보안강화 및 고도화) 노후화된 전자회의시스템(04년 구축)을 기능 개선하여 정보자원의 표준화와 해킹 등 기술보안 강화 및 고도화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 운영 체계를 구축
- (방송통신사무소 과태료징수관리시스템 구축) 과태료 징수율 향상 및 체납자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과태료 징수관리 시스템 구축
-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 지원) 방송통신 분야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위한 개방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3조(행정기관 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 “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제3조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50조(금지행위)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 등)

제51조(사실조사 등)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금지행위)

제17조(금지행위)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에게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 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제공)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제공)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11조(긴급중지명령)

제11조(긴급중지명령)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4항·제5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제13조(사실조사 등)

제13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방송통신위원회 신설에 따라 구)정보통신부 행정사무정보화사업 이관(2008)
-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2014~2016)
-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2016~2018)
- 방송통신 금지행위 위반 등에 대한 조사업무 처리절차의 개선을 위한 방안 추진('18.4월)
-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
- 조사심결지원시스템(전산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장비 도입('19.12월)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G-클라우드 전환('20.12월)
- 행정정보시스템 통합계정관리시스템 고도화('21.12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